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8월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2%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1.1%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4.1%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2024년 8월 소비는 전월대비 1.7%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승용차 등 내구재(1.2%)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7% 증가하였음(전년동월대비 1.3% 감소).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 및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4%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7.8%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2%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5.5% 감소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	2022				2023				2023 8월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7월p	8월p
생산	전 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1.8	-0.6(2.3)	1.2(1.1)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2	5.4	-3.9(5.2)	4.1(3.8)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5.6	-4.1(5.4)	4.1(3.7)
	건설업	-6.7	2.8	7.3	-1.5	1.5	1.5	4.3	2.8	1.1	1.1	-2.5	1.6	-0.7(-5.2)	-1.2(-9.0)
	서비스업	5.0	7.0	3.2	0.6	3.3	1.6	0.3	1.0	0.0	1.0	0.3	0.4	0.3(1.7)	0.2(0.9)
소비	소비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0.5	-2.0(-2.2)	1.7(-1.3)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1.3	10.2(18.7)	-5.4(7.8)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5	0.4(2.0)	0.1(1.6)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 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9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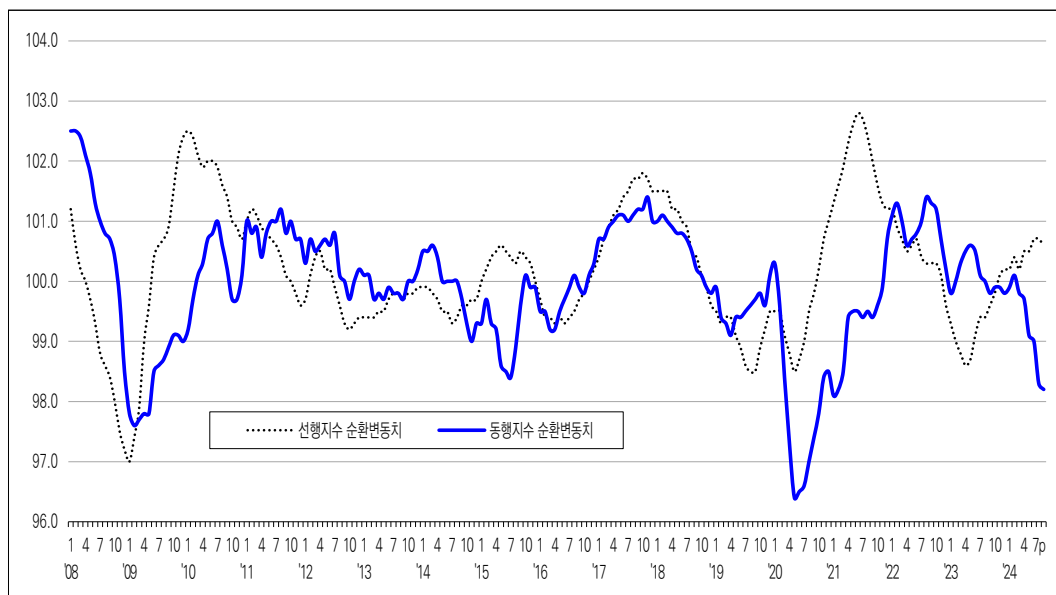
○ 202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100)로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음(전년동월대비 1.6%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1.3%), 식품·비주류음료(1.4%), 보건(0.1%), 교육(0.1%)은 상승,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0.1%), 기타상품·서비스(-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오락·문화(-0.4%), 음식·숙박(-0.5%), 교통(-2.0%)은 하락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9% 상승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 2024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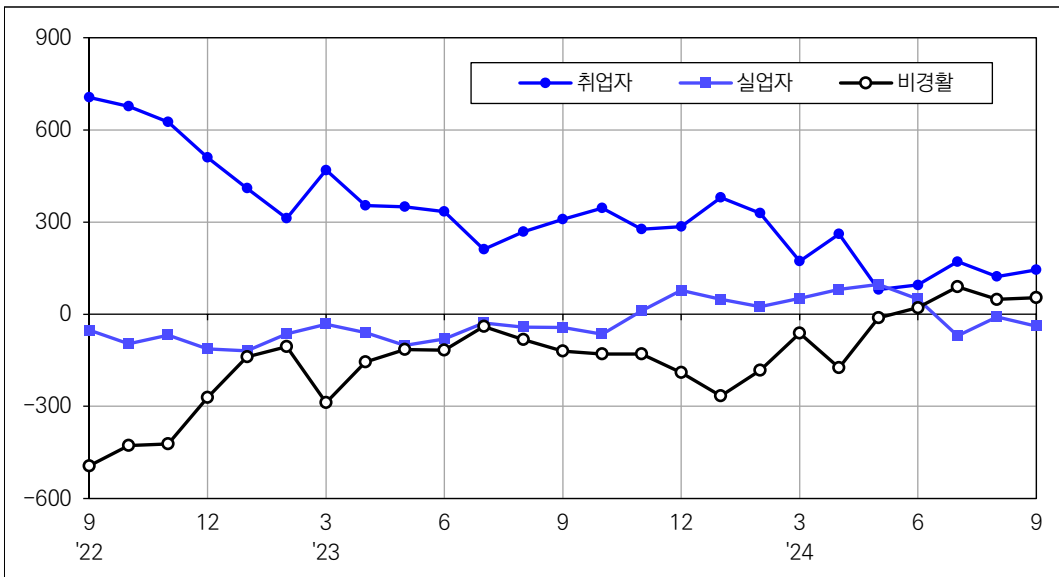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 취업자 증가

- 2024년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4만 4천 명 증가(전월대비¹⁾ 5만 5천 명 증가)함.
- (연령별) 20대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됐고 30대는 증가폭이 축소됨.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확대됨.
 - (제조업·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사업시설관리지원은 감소폭이 확대됨. 반면 숙박음식은 증가폭이 확대됐고, 협회단체는 증가로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자영업자는 증가로 전환됨.
 - (실업·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만 9천 명 감소(전월대비 5천 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만 4천 명 증가(전월대비 4만 7천 명 감소)함.
 - (확장실업률) 계절조정 확장실업률은 8.2%로 전월대비 0.5%p 감소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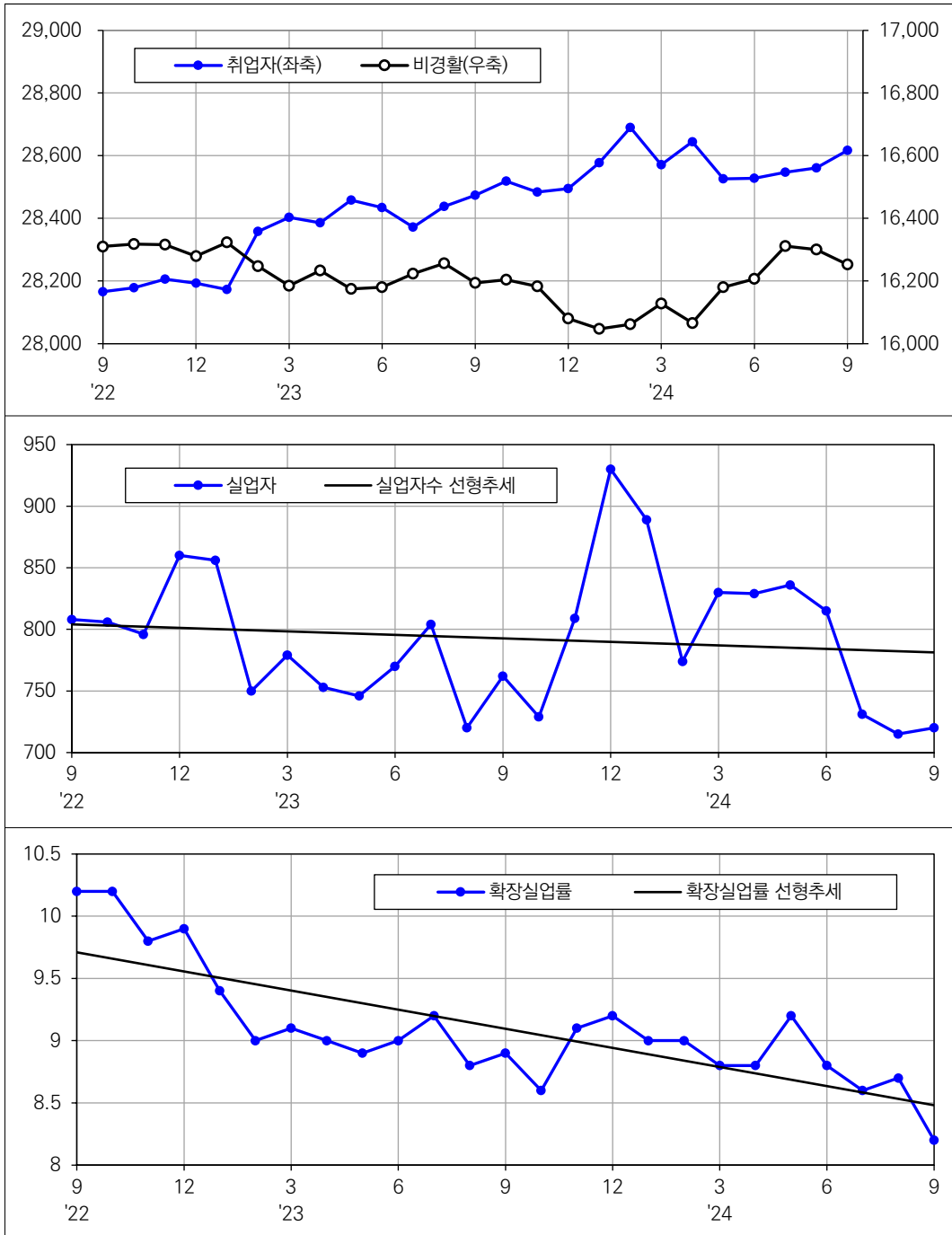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상), 실업자(중) 수 및 확장실업률(하)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9월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고용률은 감소로 전환됨. 30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됐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감소로 전환됨. 50대와 60세 이상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폭이 축소됨.

- 20대 취업자는 도·소매 및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사업시설관리 및 공공행정에서 감소로 전환됨. 반면 건설업, 보건·복지 및 협회·단체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30대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및 예술·스포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운수·창고 및 정보통신업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5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도·소매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숙박·음식, 부동산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60세 이상은 운수·창고에서 감소 전환된 반면 숙박·음식,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21	-17	-18	(-2)	-127	-124	-150	(-39)	110	99	77	(-8)
실업자	4	3	0	(-4)	-33	-26	-14	(30)	11	10	-8	(-16)
비경제활동인구	-12	-14	-9	(6)	-39	-69	-57	(-9)	-99	-85	-40	(29)
실업률	2.9	1.9	0.4	(-2.2)	-0.6	-0.5	-0.2	(0.8)	0.1	0.1	-0.2	(-0.2)
고용률	-0.8	-0.7	-0.7	(-0.1)	-0.1	0.2	-0.2	(-0.5)	1.4	1.2	0.8	(-0.2)
	40대				50대				60세 이상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7월	8월	9월	(전월비)
취업자	-91	-68	-62	(7)	23	3	25	(1)	278	231	272	(81)
실업자	-17	-12	-17	(7)	-36	0	-5	(4)	2	16	5	(7)
비경제활동인구	-45	-74	-74	(-27)	96	67	39	(-9)	188	223	196	(-45)
실업률	-0.2	-0.2	-0.2	(0.1)	-0.5	0.0	-0.1	(0.0)	-0.1	0.2	0.0	(0.0)
고용률	0.3	0.7	0.8	(0.2)	-0.5	-0.6	-0.3	(0.0)	0.5	0.1	0.4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9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숙박·음식, 공공행정,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협회·단체에서는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됨.
- － 전월대비 취업자는 협회·단체, 숙박·음식,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했고, 도·소매,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지원 등에서 감소함.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농림어업	-26	-40	-42	-6	2	4
광업	-1	-2	-1	-1	0	1
제조업	-11	-35	-49	-23	-31	-22
전기·가스·증기	5	-2	-8	2	-1	-1
수도·원료재생	-12	-8	0	-5	6	7
건설업	-81	-84	-100	-19	23	6
도매 및 소매업	-64	-55	-104	-27	3	-30
운수 및 창고업	65	94	79	21	29	-12
숙박 및 음식점업	34	7	46	1	-12	21
정보통신업	82	101	105	2	13	9
금융 및 보험업	29	32	36	5	4	9
부동산업	-27	-37	-12	-15	-14	16
전문·과학·기술	36	94	83	-1	44	-5
사업시설관리지원	-37	-30	-42	14	26	-21
공공행정·사회보장	27	25	43	0	-1	12
교육서비스업	2	9	12	40	5	17
보건 및 사회복지	117	63	75	8	-46	15
예술·스포츠·여가	25	19	2	-11	-5	-18
협회·단체·수리·기타	7	-31	17	14	-21	42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	6	9	2	-2	8
국제 및 외국기관	-3	-3	-3	-1	0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9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임시직은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자영자는 증가로 전환됨. 전월대비로는 상용직, 일용직, 자영자에서 증가함.
- － 상용직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에서 감소로 전환됨. 반면 정보통신 및 공공행정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임시직은 숙박·음식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자영업자는 농림어업, 건설업,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부동산에서 증가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상용직	96	99	79	-14	-65	45
임시직	227	191	206	22	56	-5
일용직	-71	-101	-125	-42	18	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8	26	17	16	-20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110	-64	5	17	50	25
무급가족종사자	-19	-28	-38	-7	-10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농림어업	6	2	4	12	2	2	-9	-1	-18	14	10	4	-44	-38	-19
제조업	-38	-44	-59	5	-9	-6	9	7	9	12	5	0	1	6	7
건설업	-36	-25	-67	17	15	20	-40	-56	-56	3	0	6	-29	-19	-4
도소매	-16	0	-33	13	7	17	-9	-9	-19	7	9	-11	-53	-53	-45
운수창고	50	63	50	13	12	19	5	13	10	4	-2	-3	-7	7	6
숙박음식	18	15	20	47	36	61	-15	-23	-24	-1	-12	-9	-4	-1	4
정보통신	66	63	89	-7	8	-1	1	-1	-5	3	11	9	17	20	10
금융보험	16	15	16	14	18	22	0	-1	1	-2	-4	-3	2	3	0
부동산	-19	-26	-7	-10	-13	-17	-1	0	-1	5	6	9	-1	-2	8
전문과학기술	18	72	61	12	10	8	2	-1	-1	-8	-8	-10	13	20	23
사업관리지원	-6	-12	-29	3	17	8	-23	-25	-20	-9	-10	-7	-4	-2	4
공공행정	7	6	26	20	17	18	1	2	-1	-	-	-	-	-	-
교육서비스	30	20	34	-36	-15	-30	-1	-3	-1	0	-4	-4	6	12	14
보건복지	18	-15	1	97	78	68	0	-5	-6	-1	4	7	3	1	4
예술스포츠	3	10	5	-1	0	-12	6	-2	0	12	10	12	4	2	-2
협회단체	-8	-27	-12	25	4	22	1	2	1	9	12	18	-15	-18	-8
가구 내 고용	1	1	-1	4	6	10	3	2	5	0	0	0	-2	-3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비경황) 9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에 있는 실업자는 15~29세, 4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사업시설관리지원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건설업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숙박·음식에서는 감소 전환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통학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육아·가사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반대로 여성은 통학과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표 5〉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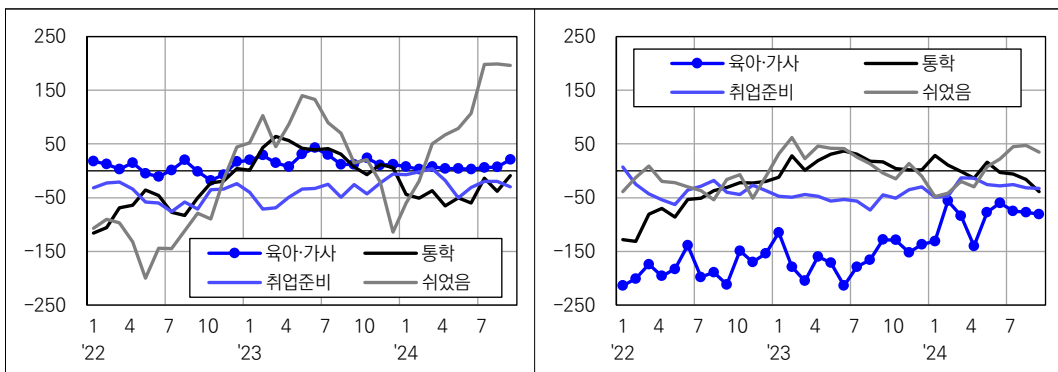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8월	9월	8월	9월	8월	9월	8월	9월	8월	9월	8월	9월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10	-33	-1	-10	-9	-11	-4	-14	7	2	18	0
농림어업	-1	-3	0	0	0	-1	0	0	-1	-1	0	-1
제조업	-12	-30	-2	-8	-1	-12	-4	0	1	0	-5	-10
건설업	28	13	1	-5	4	9	0	-2	12	4	11	8
도매 및 소매업	-11	0	-4	6	-6	-5	1	-4	-3	1	2	3
운수 및 창고업	-1	4	1	0	1	3	-3	-1	-2	0	2	2
숙박 및 음식점업	2	-7	3	-3	-3	-1	5	5	-3	-5	0	-3
정보통신업	5	7	4	7	2	4	1	-4	-2	-2	0	2
금융 및 보험업	-2	-2	-2	0	-1	-1	0	0	1	0	0	0
전문·과학·기술	1	2	-7	-13	6	14	2	2	-2	-3	2	1
사업시설관리지원	-1	-8	3	5	-1	-3	-4	-6	1	-1	2	-3
공공행정·사회보장	-7	-4	-2	1	-1	-4	-1	-1	-1	-1	-1	1
교육서비스업	4	10	-1	2	0	2	3	3	0	1	2	3
보건 및 사회복지	-3	-7	0	0	-7	-7	-1	-5	4	9	2	-5
예술·스포츠·여가	4	-6	3	-3	-2	-4	0	0	0	-2	3	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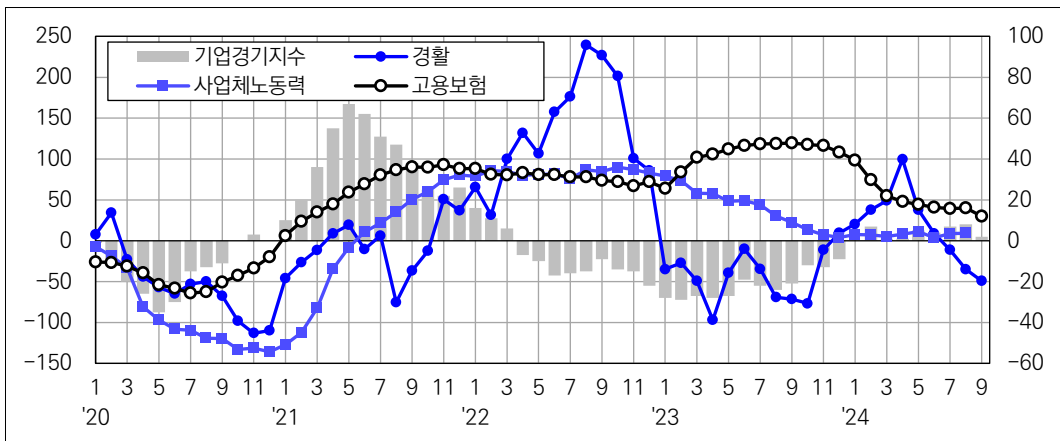
◆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 확대

○ 9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4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취업자는 2만 2천 명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됨.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이 확대됨.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을 유지함.
- － 기업경기지수는 76으로 전년동월 수준임.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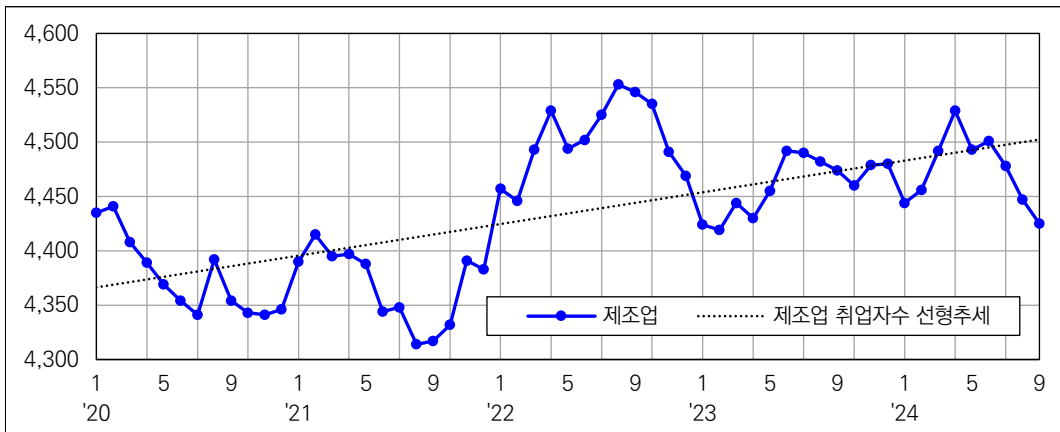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5]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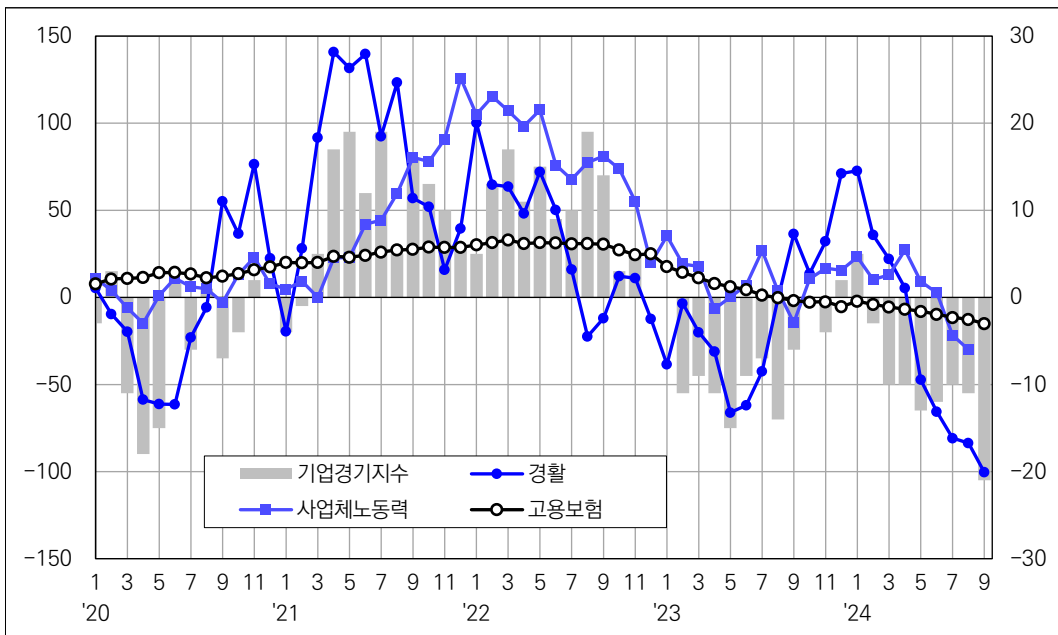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9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짐. 반면 전월대비로는 6천 명 증가함.

- 피보험자 수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와 기업경기지수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계절 조정 취업자 수를 제외한 모든 고용지표에서 감소폭이 확대하는 추세임.

[그림 6]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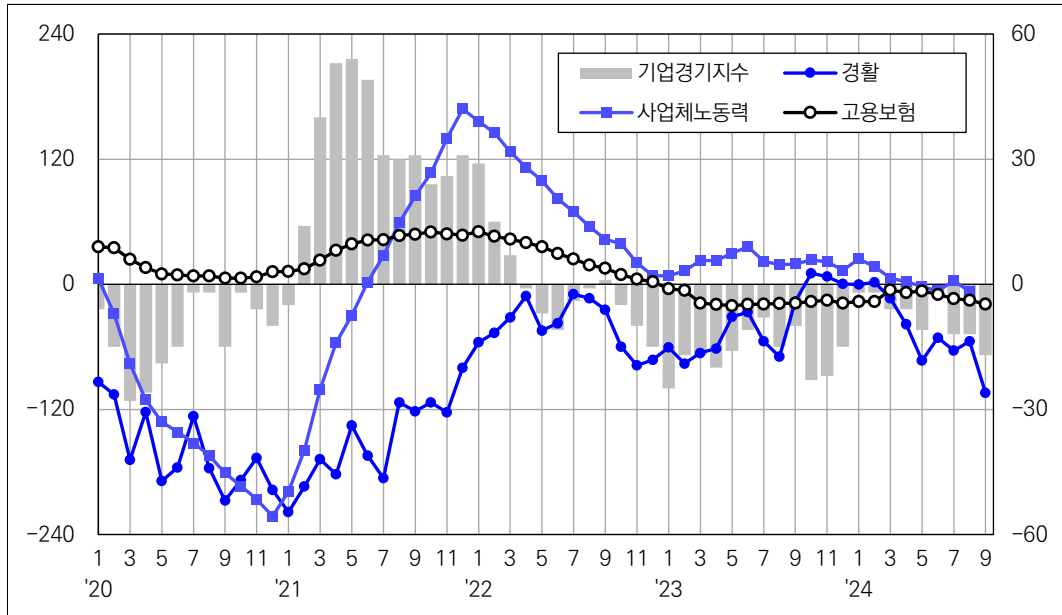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9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4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도소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만 4천 명으로 확대됨. 기업경기지수 및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폭도 확대됐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도 감소로 전환되어 모든 지표가 감소세임.
- (운수창고)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피보험자 수, 종사자 수 모두 증가폭이 축소됨.
- (숙박음식)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됨. 반면 피보험자 수 증가폭은 축소됨.
- (사업시설관리)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됨. 그 외 고용지표도 증가폭이 서서히 축소되는 추세임. 기업경기지수의 감소폭도 소폭 확대됨.
- (협회단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됐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도 감소폭이 축소됨.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4만 2천 명 증가함.

[그림 7]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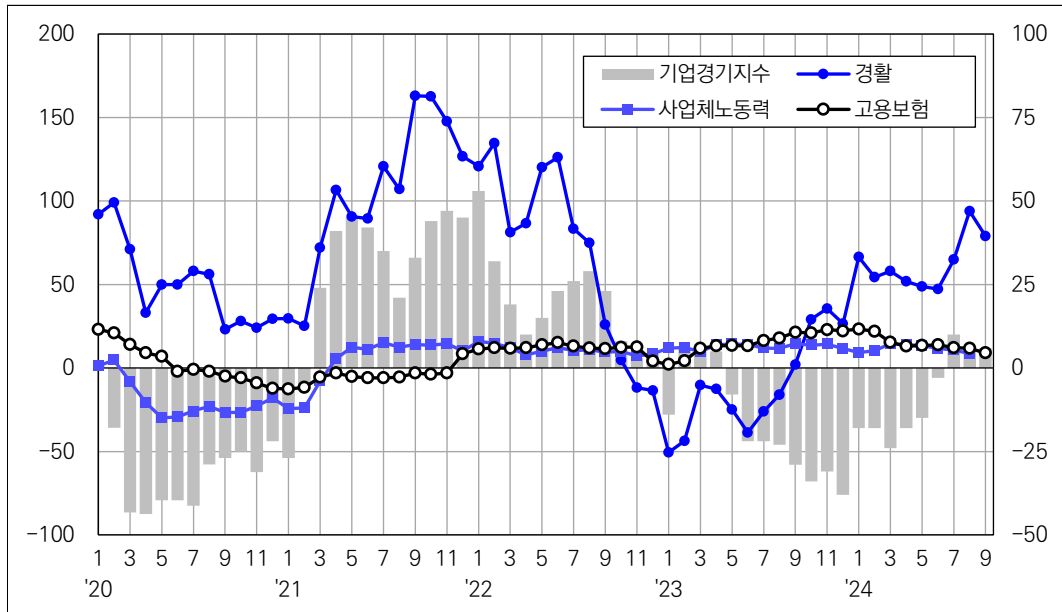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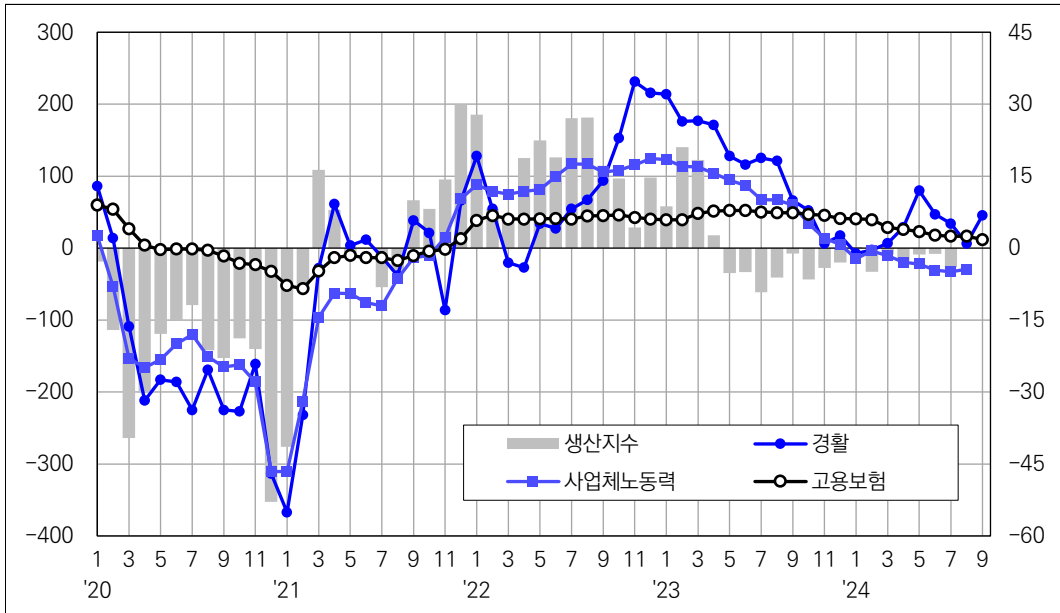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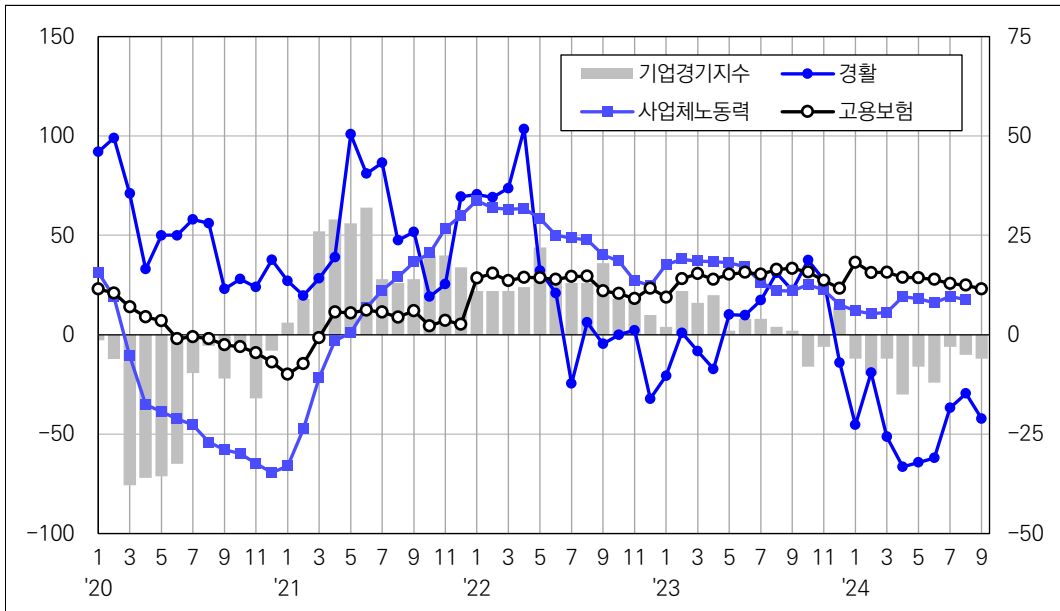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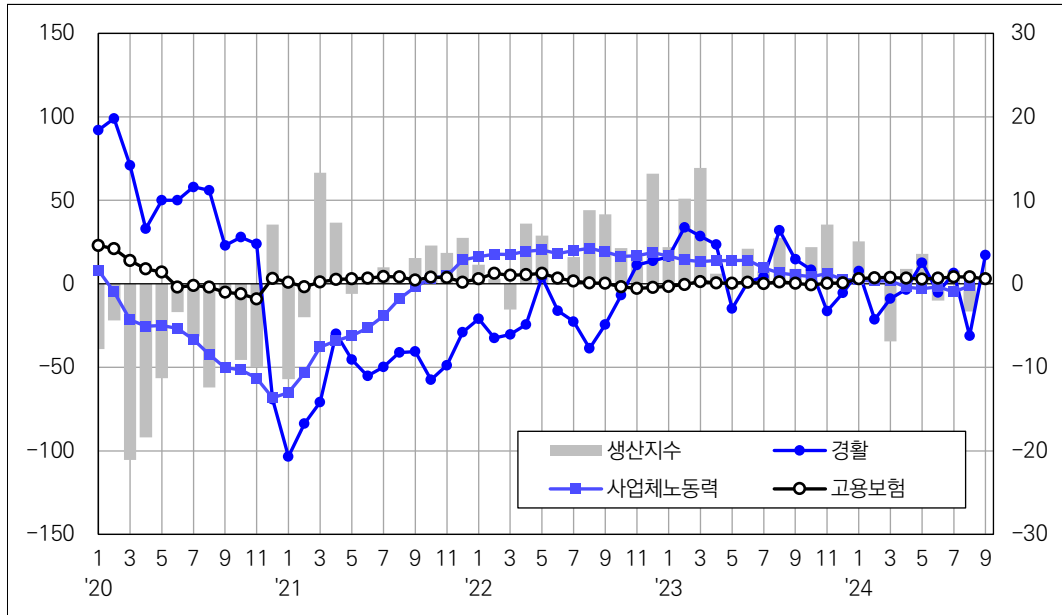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7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7.4% 증가

- 2024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5만 7천 원(7.4%)이었음.
 - － 2024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452만 4천 원)과 일용근로자 임금(191만 1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7.4%, 9.5% 증가하였음.
 - －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정액급여 증가폭이 축소되었음에도 특별급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하였음.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9%), 제조업(8.2%), 도매 및 소매업(6.8%)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컸던 데는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55.5%)가 크게 증가한 영향임.
- (1~7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06만 5천 원으로 전년 동기기간대비 3.1% 증가하였음.
 - － 전년동기간대비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플러스(+)로 전환된 영향이 큼.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특별급여가 증가한 데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 감소폭이 둔화된 영향임.
 -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5.0%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27.0% 증가하였음.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4년 7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1~7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0.3%)은 물가상승률 둔화와 명목임금 증가로 전년동기간대비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0	2021	2022	2023	2023		2024	
						1~7월	7월	1~7월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3,941 (2.2)	3,963 (1.1)	4,065 (3.1)	4,257 (7.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4,185 (2.6)	4,213 (1.4)	4,065 (3.2)	4,524 (7.4)
	정액급여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424 (4.0)	3,451 (3.5)	3,540 (3.4)	3,560 (3.1)
	초과급여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21 (2.3)	221 (2.7)	237 (7.2)	227 (2.8)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540 (-5.0)	541 (-10.5)	542 (0.3)	737 (36.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737 (-0.1)	1,745 (-0.8)	1,824 (5.0)	1,911 (9.5)
소비자물가지수		100.0 (0.5)	102.5 (2.5)	107.7 (5.1)	111.6 (3.6)	110.8 (3.7)	111.3 (2.3)	113.9 (2.8)	114.1 (2.6)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1.1	-1.4	-1.2	0.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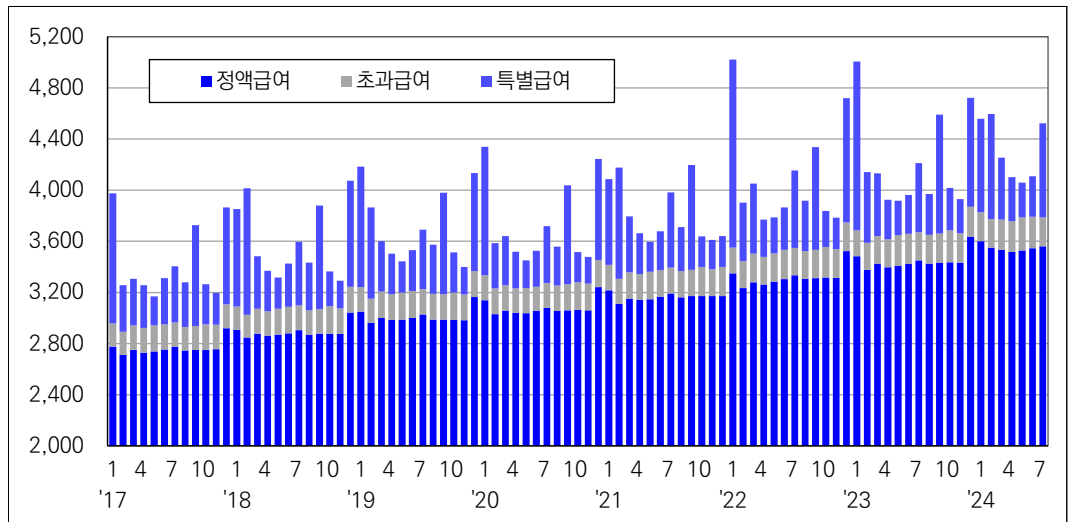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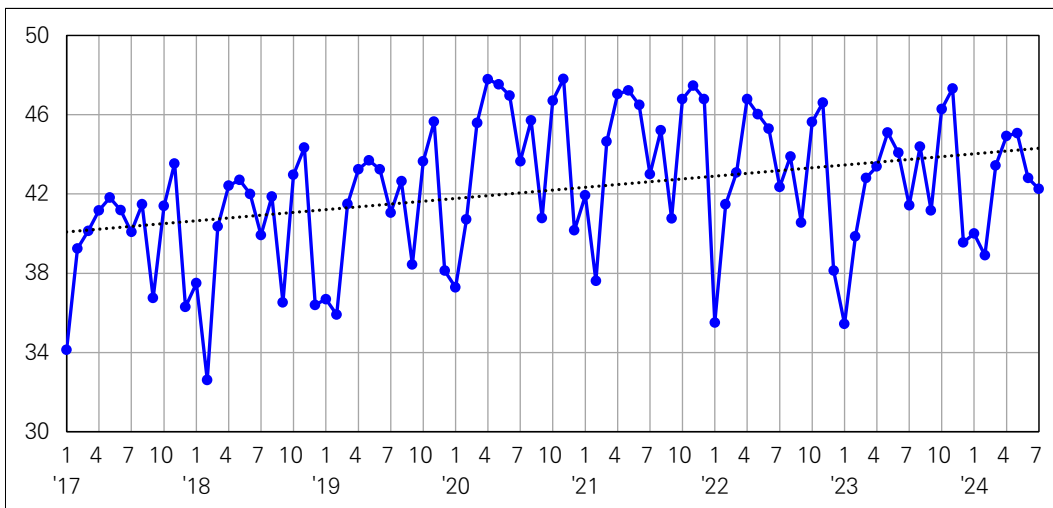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7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6.8% 상승

○ 2024년 7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370만 원)과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698만 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2%, 16.8% 증가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폭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것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영향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폭(18.9%p) 확대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폭이 둔화되었음에도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폭(78.8%p)이 컸던 데 기인함.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70.7%), 제조업(41.4%) 등에서 특별급여 증가폭이 컸음.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특별급여가 플러스(+)로 전환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였음. 특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2.9%), 건설업(50.9%), 도매 및 소매업(47.7%) 부문에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76.3% 증가하였음.
- (1~7월 평균)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각각 3.3%, 2.6% 증가하였음. 중소기업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2월부터 플러스(+) 전환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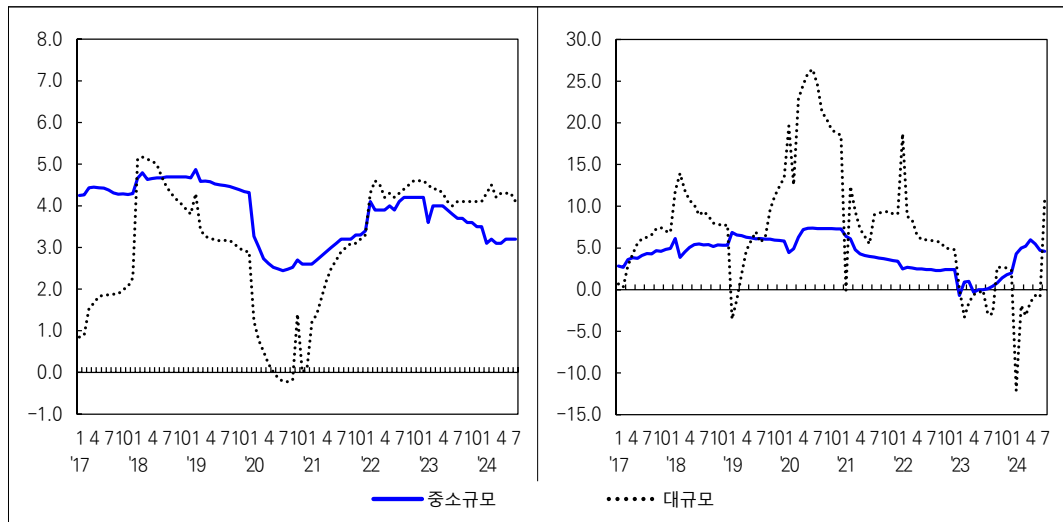
		2022	2023	2023		2024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소 계	3,462 (4.4)	3,537 (2.2)	3,499 (2.1)	3,550 (1.9)	3,361 (3.3)	3,700 (4.2)
	상용임금총액	3,675 (4.7)	3,767 (2.5)	3,726 (2.6)	3,788 (2.2)	187 (3.4)	3,951 (4.3)
	정액급여	3,139 (4.2)	3,249 (3.5)	3,233 (3.7)	3,255 (3.0)	403 (3.2)	3,361 (3.3)
	초과급여	186 (5.7)	187 (0.8)	183 (-0.4)	183 (0.7)	1,772 (7.1)	187 (2.2)
	특별급여	350 (8.7)	331 (-5.3)	310 (-6.6)	351 (-4.0)	6,988 (3.9)	403 (14.8)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2.4)	1,746 (2.0)	1,703 (0.1)	1,710 (0.7)	7,104 (4.6)	1,772 (3.6)
대규모	소 계	5,922 (6.1)	6,071 (2.5)	6,112 (1.4)	5,983 (-2.1)	4,457 (2.6)	6,988 (16.8)
	상용임금총액	6,049 (6.4)	6,212 (2.7)	6,255 (1.7)	6,129 (-1.6)	408 (2.5)	7,104 (15.9)
	정액급여	4,155 (4.6)	4,325 (4.1)	4,282 (4.1)	4,339 (4.7)	2,240 (4.1)	4,457 (2.7)
	초과급여	377 (5.5)	406 (7.6)	396 (6.8)	393 (5.9)	4,005 (7.4)	408 (3.8)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1,576 (-5.5)	1,397 (-18.5)	3,615 (-3.0)	2,240 (60.3)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4.8)	2,375 (2.3)	2,258 (-3.0)	2,271 (-16.8)	3,854 (10.8)	4,005 (76.3)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7월 월평균 임금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4년 7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7%), 제조업(9.1%) 순으로 나타남.

- －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임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270.7%)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 제조업(9.1%)의 임금상승률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41.4%) 증가와 임시일용근로자(196.5%)의 임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임.
- － 7월 기준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41만 2천 원)이었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5만 5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3,869 (4.9)	3,966 (2.5)	3,941 (2.2)	3,963 (1.1)	4,065 (3.1)	4,257 (7.4)
광업	4,608 (4.4)	4,636 (0.6)	4,639 (0.4)	5,390 (0.5)	4,916 (6.0)	5,691 (5.6)
제조업	4,484 (5.8)	4,633 (3.3)	4,629 (3.0)	4,635 (2.1)	4,718 (1.9)	5,059 (9.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 (2.3)	7,188 (4.1)	7,398 (11.4)	7,735 (19.5)	7,690 (3.9)	7,288 (-5.8)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 (1.8)	4,297 (3.1)	4,176 (3.4)	4,146 (2.8)	4,310 (3.2)	4,252 (2.6)
건설업	3,229 (4.0)	3,359 (4.0)	3,330 (4.0)	3,332 (3.9)	3,442 (3.3)	3,474 (4.3)
도매 및 소매업	3,773 (6.3)	3,921 (3.9)	3,876 (4.3)	3,913 (2.6)	4,027 (3.9)	4,165 (6.4)
운수 및 창고업	4,040 (6.5)	4,185 (3.6)	4,131 (5.2)	4,452 (-1.4)	4,305 (4.2)	4,486 (0.8)
숙박 및 음식점업	2,004 (5.2)	2,097 (4.7)	2,075 (4.6)	2,102 (3.1)	2,138 (3.0)	2,155 (2.5)
정보통신업	4,999 (4.2)	5,120 (2.4)	5,135 (1.9)	5,047 (4.3)	5,355 (4.3)	5,235 (3.7)
금융 및 보험업	7,324 (5.2)	7,338 (0.2)	7,417 (-0.6)	7,080 (6.8)	7,553 (1.8)	7,412 (4.7)
부동산업	3,086 (4.5)	3,117 (1.0)	3,110 (0.1)	3,119 (-0.7)	3,177 (2.1)	3,245 (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 (5.3)	5,464 (1.6)	5,341 (0.1)	5,369 (-7.1)	5,618 (5.2)	6,671 (24.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 (3.7)	2,687 (4.0)	2,651 (3.3)	2,669 (3.4)	2,765 (4.3)	2,782 (4.3)
교육서비스업	3,435 (2.4)	3,508 (2.1)	3,545 (2.1)	3,732 (2.0)	3,652 (3.0)	3,84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 (3.6)	3,132 (0.3)	3,099 (0.1)	3,122 (-0.1)	3,186 (2.8)	3,202 (2.6)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 (2.8)	3,058 (-0.6)	3,055 (0.7)	3,141 (0.3)	3,097 (1.4)	3,140 (0.0)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32 (4.9)	3,009 (6.2)	2,960 (5.4)	2,976 (1.7)	3,075 (3.9)	3,295 (10.7)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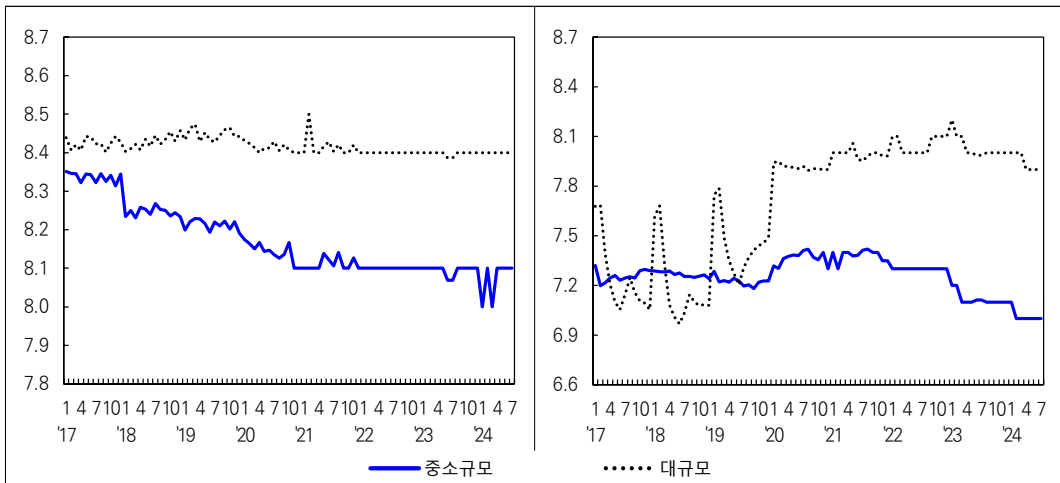
- (1~7월 평균)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기간대비 임금이 증가하였음. 특히 광업(6.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 부문에서 임금 상승폭이 컸으며, 제조업은 평균상승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7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0.2시간 증가(근로일수 2일 증가)

- 2024년 7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2시간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78.2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1.6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9.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증가한 영향이 컸음.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정보통신업(8.8%), 금융 및 보험업(8.5%), 건설업(8.2%) 부문으로 나타남.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운수 및 창고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10.0%)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7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168.1시간)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74.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0.3시간, 10.1시간 증가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7월	7월	1~7월	7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1.2)	155.3(-1.9)	156.3 (-0.4)	157.8(-2.0)	168.1(-0.7)	168.1(6.5)
	상용 총근로시간	165.9(-1.1)	164.0(-1.1)	164.9 (0.4)	166.7(-1.3)	178.5(-0.3)	178.5(7.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1.2)	156.7(-0.9)	157.7 (0.8)	159.5(-1.2)	171.5(-0.4)	171.5(7.5)
	상용 초과근로시간	7.7(0.0)	7.3(-5.2)	7.2 (-6.5)	7.2(-4.0)	7.0(2.8)	7.0(-2.8)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1.0)	88.2(-8.5)	88.3 (-8.5)	88.5(-9.5)	87.9(-3.7)	87.9(-0.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1.2)	160.5(0.1)	161.5 (1.6)	164.2(-0.2)	174.3(-0.2)	174.3(6.2)
	상용 총근로시간	161.7(-1.0)	162.1(0.2)	163.2 (1.9)	166.0(0.1)	176.5(-0.1)	176.5(6.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1.1)	150.9(0.2)	152.1 (1.9)	155.0(-0.1)	165.7(-0.3)	165.7(6.9)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0.9)	11.2(1.8)	11.1 (0.9)	11.0(2.8)	10.8(2.7)	10.8(-1.8)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2.3)	117.5(-5.9)	117.6 (-5.4)	118.6(-9.0)	116.9(-3.4)	116.9(-1.4)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7월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

○ 2024년 7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수가 2일 증가한 영향으로 광업(11.0%),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8.5%) 부문에서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87.4시간),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184.1시간), 제조업(182.8시간) 순이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9.2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7월	7월	1~7월	7월
전 산업	158.7(-1.2)	156.2(-1.6)	157.2(-0.1)	158.9(-1.7)	156.2(-0.6)	169.1(6.4)
광업	174.8(-2.8)	168.5(-3.6)	168.7(-3.1)	168.8(-6.2)	170.6(1.1)	187.4(11.0)
제조업	171.1(-1.4)	170.5(-0.4)	171.9(1.1)	173.1(-0.8)	171.6(-0.2)	182.8(5.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1.9)	160.0(0.9)	160.7(1.5)	162.6(-2.6)	157.4(-2.1)	166.6(2.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1.4)	170.0(-2.5)	170.8(-1.6)	173.5(-1.8)	170.6(-0.1)	184.1(6.1)
건설업	134.3(-1.2)	128.7(-4.2)	129.4(-3.1)	129.8(-4.9)	128.5(-0.7)	139.2(7.2)
도매 및 소매업	162.3(-0.9)	159.2(-1.9)	160.2(-0.4)	161.8(-1.9)	159.1(-0.7)	173.7(7.4)
운수 및 창고업	160.6(0.2)	160.6(0.0)	161.0(1.5)	163.8(0.4)	160.6(-0.2)	172.2(5.1)
숙박 및 음식점업	146.5(-1.3)	138.8(-5.3)	139.1(-4.1)	141.2(-5.7)	137.7(-1.0)	146.9(4.0)
정보통신업	162.7(-0.9)	162.2(-0.3)	163.0(1.2)	166.2(0.0)	163.5(0.3)	180.4(8.5)
금융 및 보험업	159.8(-1.3)	159.3(-0.3)	161.0(2.0)	163.2(0.3)	159.9(-0.7)	177.0(8.5)
부동산업	169.4(-1.4)	167.5(-1.1)	168.0(0.2)	169.7(-1.6)	167.8(-0.1)	179.0(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0.8)	158.8(-0.9)	160.0(0.8)	162.9(-0.7)	159.5(-0.3)	175.3(7.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1.4)	158.2(-1.0)	158.7(0.2)	160.8(-0.9)	158.8(0.1)	172.4(7.2)
교육서비스업	136.1(-0.8)	135.9(-0.1)	136.4(1.6)	136.4(-2.1)	135.0(-1.0)	147.5(8.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1.9)	150.7(-3.0)	151.5(-1.5)	153.8(-2.7)	149.5(-1.3)	163.0(6.0)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1.2)	148.2(-1.7)	149.4(0.0)	150.7(-1.6)	146.8(-1.7)	157.9(4.8)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0.3(-1.3)	160.3(0.0)	161.2(1.5)	164.0(0.7)	160.2(-0.6)	174.4(6.3)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7건
 - －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7건)보다 10건 많은 수치임.
- 2024년 9월 조정성립률 50.0%
 - － 9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33.3%보다 16.7%p 높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9.	17	11	4	2	2	4	2	2	1	2	15	50.0%
2023. 9.	7	13	4	1	3	8	2	6	-5	11	3	33.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9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1건임.

〈표 2〉 2023년, 2024년 9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9.	1	1	1	0	0	1
2023. 9.	0	3	2	0	1	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72건
 - － 9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00건)보다 28건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4.7%(46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3%(140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9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9.	172	186	39	7	108	3	18	11	693
2023. 9.	200	209	46	6	118	2	20	17	55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¹⁾ 건수는 3건
 - －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0건)보다 많은 수치임.
 -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7.1%(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42.9%(3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9.	3	7	4	0	2	0	1	0	5
2023. 9.	0	4	1	0	3	0	0	0	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대법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 9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옛 친구넷)가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 소송은 대리운전업체 2곳(에프엔모빌리티·손오공)이 2014년 5월께부터 대리기사를 모집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음.
- 업체들은 대리운전 접수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콜’을 공유해 기사를 배정했음.
- 대리운전업체 ‘손오공’과 계약을 체결한 B씨는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를 설립한 뒤 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음.
- 업체들은 “대리기사는 사업자일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고, B씨 등 조합원 3명을 상대로 2019년 2월 소송을 냈음.
- 쟁점은 △대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대리기사의 소득의존성·지속성·전속성 인정 여부 △대리기사의 업무 선택권이나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로 모아졌음.
- 1·2심은 대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음. 기사들이 사실상 업체를 통해서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어 ‘종속적’ 지위에 있다고 봤음.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상고심 전에 업체 ‘손오공’ 대표가 사망해 에프엔모빌리티만 판단을 받았음. 대법원은 업체가 대리운전비를 정한 상태에서 기사들이 콜을 받아 운전했으므로 보수는 업체가 결정했다고 봤음.

◆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5% 감소

- 10월 6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역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감소했음.
-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96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음.
- 반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역지자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581건 가운데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168건(28.9%)에 그쳤음.
- 이는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때문으로 보여짐.
- 공무원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례 등에 근로기준법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지체 없이 조사’는 지자체 8곳의 조례에만 포함돼 있음. 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을 조례나 훈령에 명시해둔 지자체는 6곳에 불과했음.

◆ 2017년 이후 택배기사 과로사 36건

- 9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 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40명이었고, 이 중 36명이 택배기사였음.
- 산재 승인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6월 기준 3건이었음. 사업장별로는 경동택배(10건), CJ대한통운(8건), 로젠택배(4건), 우체국물류지원단(2건), 한진택배(1건), 현대택배(1건) 순이었음.
- 국내 5대 택배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롯데글로벌로지스에는 질병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CLS 남양주 2캠프에서는 A씨가 과로사 추정 사망했고, 8월에는 시흥2캠프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음.

◆ 택배 노동자 산재 사망 코로나19 이후 산재 사망 4배 이상 늘어

- 9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 재해 현황’을 보면, 택배 일을 하던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져 2017~2019년 3년간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8명이었음.
- 같은 이유로 2020~2022년 산재를 인정받은 이는 모두 3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가운데 과로사의 주요 판단 지표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이는 2017~2019년 5명에서 2020~2022년 사이에는 23명으로 크게 늘었음.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산재 인정자 33명 가운데 69.7%에 달함.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사망 산재를 인정받은 택배 노동자도 모두 16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숨졌음.
- 택배노조 등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등 노동환경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불러일으킨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음.

- 2023년 10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야간 근무 규율과 보호 △폭염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택배 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권고하기도 했음.

◆ 플랫폼 · 특고 10명 중 8명 “다쳐도 산재 안 돼”

- 10월 27일 서비스연맹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 · 고용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연맹이 9월 26~3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플랫폼 · 특수고용 노동자 747명 중 82.1%는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의심될 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 그 이유(복수응답)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거나(42.7%) 절차와 과정이 복잡(41%)하기 때문으로 보임.
- 특히 응답자 39.3%는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실업을 경험해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분실업(일을 중단했지만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상태여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37.4%로 뒤를 이었음.
- 이들은 제도 보완 방안으로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53.9%)과 고용보험에서 플랫폼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고려한 부분적 실업의 인정(67.1%)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음.

◆ 한 해 폭행당하는 119구급대원 300명

- 10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음.
-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음. 매년 300명 정도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음.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음.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음.

-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음.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

- 10월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음.
- 플랫폼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 80%를 월 최대 1만 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함.
- 올해부터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 2021~2023년 3년간 총 9,432건을 지원했음. 올해는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임.
- 플랫폼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함. 지급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임.
-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주임.

◆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 10월 8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 현재 한 달에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하였음.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3개월까지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 4~6개월엔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까지 지급함.
- 현재 육아휴직 뒤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이 지난 뒤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열두 달 쓰게 되면 지금은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턴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임.
-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때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이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오름.
- 새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나, 2024년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바뀐 제도가 적용됨.
- 이외에도 내년부턴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할 수 있

도록 제도가 바뀜.

-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의사 표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자동으로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가면 됨.
- 기업이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구하는 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